

2022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및 제출서류 안내

□ 수강신청 일정 및 관련 내용

항목	일정(기간)	비고
수강신청	2022. 8. 18.(목) ~ 8. 24.(수) ▷ 장애학생 2022. 8. 17.(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 17.(수) 장애학생 신청은 수강정원 30% 까지 가능 · 신청 시간 : 시작일 09:00 ~ 종료일 18:00
수강신청 변경	2022. 8. 29.(월) ~ 9. 2.(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강신청·변경 기한 준수 : 9. 2.(금) 이후 수강변경 불가 (단, 복학 마감기한 내 복학생은 예외)
수강신청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s://newhaksa.knuw.ac.kr/(학사시스템) 로그인 > 학사관리 > 수강신청 ※ 학사시스템(최초) 아이디: 학번 /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 전공 교과목 신청방법 (신청년도, 학기 확인후) 조회 > 신청 ○ 교양 교과목 신청방법 <u>1학년, 타학과, 소속학과없음(교양과)로 선택 후 조회 > 신청</u> ○ 학생 최종확인 : 학사시스템>학사관리>수강신청>수강신청 [인쇄] 버튼 왼쪽 [수강확인] 버튼 클릭 ※ 학생 최종확인이 되면 수강신청완료일시가 시스템상 자동 기재됨 	
수강신청 최소학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5학점 이상 신청 단, 졸업학점 미이수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신청 	
타과 수강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기당 6학점 이내 신청 가능 	
폐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공교과(전공심화과정의 교과는 제외)의 경우 5명 미만 ○ 교양교과는 10명 미만, 모던음악과 전공실기는 2명 미만 ※ 단, 특별한 사정인 경우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강하지 아니할 수 있음 	
참고사항 (휴·복학 마감 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학 : 2022. 9. 16.(금) 까지, 개강 후 3주 이내 ○ 휴학 : 2022. 9. 23.(금) 까지, 수업일수 4분의 1선 	
<p>※ 학과에서는 학생 개개인이 적용 받아야 할 교육과정표와 지금까지 이수한 성적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수강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p>		

□ 학과 제출 서류

순	항목	관련내용	기한
1	졸업학점 미이수자 수강신청 현황 [서식1]	○ 졸업 요건 미충족자의 수강 신청 현황 ※ 졸업탈락 학생은 수강 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액 일부만 납부	2022. 9. 9.(금)
2	재수강(이수) 신청 현황 [서식2]	○ 기이수하거나 학점 미취득 교과목을 재이수하고자 할 경우 ※ 단, C+(평점2.5) 이하 인 경우 신청 가능, 성적은 B+ 까지만 인정	
3	재수강(이수) 신청서 (국가자격 취득 목적) [서식3]	○ 국가자격증 취득과 관련하여 재수강 희망시 ○ 교무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용 가능	
4	대체 교과목 신청서 [서식4]	○ 재수강 교과목이 개설되지 않거나 폐강된 경우 ○ 사전에 교무처장 승인을 받아야 함	
5	타과 수강신청 현황 [서식5]	○ 학사운영규정 제23조의2의 사유로 인한 타과 수강 신청 ○ 교과목 담당교수 및 학과장 허가를 득하여 신청 ○ 학기당 6학점 이내로 신청가능(창의자율전공학부 제외) ○ 타과 교과목 이수시 이수구분을 일반선택으로 하며, 전공·교양 외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함	2022. 9. 5.(월)
6	학점인정 신청서 [서식6]	○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에서 일정의 교과 과목을 이수한 학생이 있는 경우 제출 ※ 학점인정신청서, 성적증명서 및 기타 증빙서류 첨부	
	(학과 보관) 개인별 수강신청 확인서 출력본	○ 학사시스템 학생 개인별 수강신청 확인서를 출력 하여 학과 자체 보관(학생확인일시 또는 자필서명) ※ 수강신청시 학생 최종확인이 되면 학사시스템 개인별 수강 신청 확인서 학생 서명란에 최종확인일시가 자동 기재됨	별도 제출 없음

※ 제출서류 1~6은 학과별 해당내역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함

□ 관련 규정(수강 · 타과수강 · 재수강 신청, 학점인정 등)

학칙 제38조(수강신청) 학생은 매 학기 소정의 수강신청 기간에 교육과정표, 강의시간표를 참고하여 다음 학기에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의 수강을 신청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은 총장이 따로 공고한다. <개정 2017.2.27.>

학사운영규정 제23조(수강신청) ① 등록을 필한 학생은 매 학기 초 소정의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강신청한 자가 수강신청을 변경할 때에는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에 수강신청 전산망을 통하여 수강 변경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 <개정 2021.5.10.>

학사운영규정 제23조의2(타과수강) ① 타 학과 과목 수강은 아래의 경우에 인정할 수 있다.

1. 소속 학과 교육과정 변경 또는 교과목 폐강
2. 졸업 등 요건에 필요한 경우
3. 폭넓은 지식 등 전공분야 심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② 타 학과 수강신청은 교과목 담당교수 및 학과장 허가를 득하여 수강할 수 있다.

<개정 2016.2.25.>, <개정 2021.4.8.>

수업관리 및 운영지침 제8조의2(타과 수강신청) ① 타 학과 전공 수강은 수강신청 기간내 교과목 담당교수 및 학과장 허가를 득하여 학사시스템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5.10.>

② 타 학과 전공은 학기당 6학점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창의자율전공학부 제외).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장의 승인하에 6학점을 초과할 수 있다. <신설 2021.5.10.>

③ 타 학과에 개설된 교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 경우에는 이수구분을 일반선택으로 하며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한다. <신설 2021.5.10.>

학사운영규정 제24조(신청학점) ① 학생은 학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학기 5학점 이상을 수강하여야 한다. 다만, 수업연한 경과자로서 이수학점 부족으로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잔여 학점만을 수강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6.1.>

학사운영규정 제25조(재수강신청) ① 학점 미취득 과목의 재수강은 필수과목을 우선하여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수강하여야 할 교과목이 개설되지 않거나 폐강된 경우에는 대체 교과목을 지정하여 수강하게 하며, 이 경우 사전에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6.1.>

③ 재수강하여야 할 교과목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해당 교과목이 다른 교과목과 통합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교과목 또는 통합된 교과목을 재수강하여야 한다.

④ 재수강신청의 대상이 되는 필수 교과목이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선택 교과목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의할 수 있다.

⑤ 성적등급이 C+(평균2.5)이하인 교과목만 재수강 할 수 있다. 다만, 국가자격증 취득과 관련하여 교육과정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재수강 희망 시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7.6.1.>, <개정 2018.7.6.>

⑥ 재수강한 교과목 성적등급은 B+(3.5)이하로 부여한다.

⑦ 재수강한 교과목 성적은 재수강 신청하여 취득한 성적과 그 이전 성적을 비교하여 높은 성적을 반영한다.

학사운영규정 제27조(수강제한) 강의시간표상 중복되는 교과목과 이미 이수한 교과목은 수강신청할 수 없으며, 과오 또는 고의로 동일 내용의 교과목을 중복하여 이수한 때에는 후에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학사운영규정 제28조(폐강) 수강 신청한 학생 수가 전공교과(전공심화과정의 교과는 제외)는 5명 (모던음악과 전공실기는 2명), 교양교과는 10명 미만인 경우 폐강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6.1.>

학칙 제34조(학점 인정)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하며, 편입학의 경우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7.2.27.>

1. 국내외의 다른 대학(전문대학,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제32조 또는 제33조 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점
 3. 국내외의 고등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대학 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학점 <개정 2017.2.27.>
 4.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학점 <개정 2017.2.27.>
 5. 「병역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 <신설 2017.2.27.>
- ② 제1항제5호에 따라 학점을 취득할 경우 학기당 6학점 연간 12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7.2.27.>
-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학점으로 인정하며, 편입학의 경우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7.2.27.>
1. 본교 모집단위(학과·학부)의 교육과정과 연관성이 있는 타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우 <개정 2019.7.2.>
 2. 본교 모집단위(학과·학부)의 교육과정과 연관성이 있는 타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경우 <개정 2019.7.2.>
- ④ 제3항에서 인정 가능한 산업체의 종류는 별표5와 같다. <개정 2017.2.27.>
- ⑤ 학점인정 및 승인에 관한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2.27.>

학사운영규정 제24조의2(학점인정 신청절차) ① 학칙 제34조에 의거 학점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학기 개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성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학점인정 요청 신청서를 교무처로 제출한다. <개정 2017.6.1.>

- ② 교무처는 학점인정심의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8호 서식의 학점인정 승인내역서를 소속학과와 사무처로 통보하되, 교과목의 학점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본교 교육과정의 이수학점에 따른다. <개정 2017.6.1.>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학점은 학적부에 등재하여 “학점인정(확인)”으로 표기하고 합산처리한다. <개정 2017.6.1.>
- ④ 창업학점, 대체학점 및 학점교류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2.25., 2017.6.1.>

학점인정 시행지침 제2조(학점인정의 기준) 학점인정(편입생 제외)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전적대학 등에서 이수한 과목 중 본 대학 교육과정표를 기준으로 동일한 과목 및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학점 및 교과목 이수를 인정한다.
2. 학사운영규정 제24조의2제2항에 의거하여 교과목의 학점이 전적대학 등과 본 대학이 서로 다른 경우 본교 교육과정의 이수학점에 따르되, 전적대학 등에서 이수한 학점이 본 대학 학점보다 많거나 같을 경우에 한한다.
3. 학점인정 상한선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의 범위 내에서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한다.